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7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7호와 제70조의11부터 제70조의15 및 제84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계약등기 감액요건 및 이용조건(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4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우정사업본부장

계약등기 감액요건 및 이용조건 등에 관한 고시

Ⅰ. 계약등기 우편서비스

1. 종류 및 취급범위

가. (일반 계약등기) 우편요금이 통상우편 기본요금(5g 초과~25g까지)의 10배 미만에 해당하고, 동일 발송인이 1회 500통 이상 월 10,000통 이상(두 요건 모두 충족) 발송하는 등기통상우편물

나. (맞춤형 계약등기) 우편요금이 통상우편 기본요금(5g 초과~25g까지)의 10배 이상에 해당하고, 1회 및 월 발송물량 제한이 없는 취급 및 배달시 특별한 관리 및 서비스가 필요한 등기통상우편물

2. 이용조건

가. 계약관서

1) 우편집중국

2)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나. 최소 접수물량

1) (일반 계약등기) 1회 500통 이상이고 월 10,000통 이상(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2) (맞춤형 계약등기) 제한 없음

다. 제공서비스

1) (일반 계약등기) 일반등기에 준하여 서비스하되,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우편물에 한하여 추가 서비스 제공

2) (맞춤형 계약등기) 일반등기보다 높은 우편요금에 따른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별도로 익일특급 처리 및 3회 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송인이 별도의 추가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협의하여 제공

3. 감액대상 및 요건

가. 감액 대상 및 제외 사항

1) (감액대상) 우편관서와 이용자 간에 계약등기우편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1회 500통 이상이고 월 10,000통 이상(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발송하는 일반 및 맞춤형 계약등기우편물

2) 감액대상 제외 사항

가) 감액률은 접수방법 및 이용물량에 따라 적용하되 동일 고객이라도 계약 우체국에 접수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해서는 감액 불가

나) 부가취급서비스 중 “착불배달”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접수방법 및 이용물량에 따른 감액 대상에서 제외

다) 우체국 직원이 계약기관 및 계약기관의 소속기관, 계약기관이 지정한 기관을 방문하여 우편요금을 수납(수령)하는 경우에는 접수방법 및 이용물량에 따른 감액대상에서 제외

라)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하여 우편물 발송기관이 우편관서를 대신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우편요금을 수납하여 우편관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접수방법 및 이용물량에 따른 감액대상에서 제외

나. 감액요건

1) 접수방법에 따른 감액요건

가) 1회 접수하는 우편물의 크기와 중량이 동일하여야 함

나) 등기번호 바코드(bar code) 자체제작 라벨(label)을 부착 또는 인쇄하는 경우에는 우편관서가 사전에 부여한 일련번호를 등기번호로 사용하고 판독 가능하여야 하며, 사전에 계약 우편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접수정보(수취인 송달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사업자 포털(http://biz.epost.go.kr)’의 다량등기 또는 전자우편 등의 창구를 이용하거나 외부연계 Hub(웹서비스) 방식 등으로 연계하고, 수취인 송달정보는 제출되는 우편물의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수록되어야 하며, 외부연계에 필요한 모듈(Module)은 우정사업본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수취인 송달정보를 전산시스템(사업자 포털 창구 또는 외부연계 Hub)을 통해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한 배달결과 검색(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라) 우편번호 앞 3자리를 구분하여 제출하는 경우 우편번호 앞 3자리별로 묶거나(고무줄 묶음) 간지(종이 등)를 삽입하여 구분한 후 용기(상자 등)에 담아서 제출하여야 함

마) 우편집중국을 직접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문시간, 물량 등을 계약 우편관서에 통보(通報)하여야 함

바) 계약등기우편물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 기재사항 표시위치에 ‘계약등기’, ‘맞춤형 계약등기’ 표시 및 부가취급서비스 내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외부 기재사항 등은 사전에 계약 우편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이용물량에 따른 감액요건) 맞춤형 계약등기 이용자 중 일반 및 맞춤형 계약등기우편물량이 각각 1회 500통 이상이고 월 10,000통 이상(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에 해당되고 일반 및 맞춤형 계약등기우편물을 합산하여 월 5만통 이상인 계약등기우편물

다. 감액률

1) 감액률 구분

접수방법(6%)				이용물량(4%)	계
등기번호 바코드(bar code) 인쇄	접수정보 on-line 연계제출	우편번호 앞 3자리	집중국으로 직접접수	5만통 이상 0.5%, 매 5만 통까지 마다 0.5%	
2%	2%	1%	1%	4%(최고)	10%

2) 감액률 적용방법

가) 접수방법에 따른 적용기준

(1) (일반 계약등기) 우편요금과 등기취급 및 부가취급 수수료를 합산한 요금에서 감액률 적용

(2) (맞춤형 계약등기) 표준요금과 부가취급수수료를 합산한 요금에서 감액률 적용

나) 이용물량에 따른 적용기준

(1) (적용방법) 일반 및 맞춤형 계약등기우편물을 합산하여 적용

(2) (물량합산) 월간 누적 이용물량(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회 500통 이상 이용한 물량을 모두 합산하여 감액률 적용)

Ⅱ. 부가취급 서비스

1. 착불배달

가. (이용조건) 우편요금 등을 수취인이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의 승낙을 얻은 계약등기우편물

나. (취급방법) 발송인이 우편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취인에게 우편요금(등기취급수수료 포함)과 착불배달 수수료를 수납

다. 환부된 착불배달우편물 처리

1) (대상) 수취인에게 착불배달하지 못하고, 발송인에게 환부된 착불배달 계약등기우편물

2)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처리) 우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발송인에게 우편물을 환부하고, 발송인에게 착불요금을 제외한 우편요금(등기취급수수료 포함) 및 환부취급수수료를 징수하되 맞춤형은 착불요금을 제외한 우편요금(등기취급수수료 포함)만 징수

2. 회신우편

가. (이용조건) 발송인이 사전에 배달 및 회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계약관서와 협의하여 정한 계약등기우편물

나. (취급방법) 수취인을 직접 대면하여 우편물을 배달하고, 회신통지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에 필요한 서명·날인을 받거나, 수취인이 인계하는 서류를 인계받아 발송인 또는 발송인이 지정한 자에게 회신

3. 본인지정배달

가. (이용조건) 수취인의 개인정보 누출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송인이 수취인 본인에게 배달토록 지정한 계약등기우편물

나. (취급방법)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

4. 우편주소 정보제공

가. (이용조건) 발송인이 계약관서와 사전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용 및 요금후납 계약이 되어 있고 수취인의 변경된 주소정보를 발송인에게 통지함에 있어 배달시 수취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우편물

나. (취급방법) 우편주소 변경사유(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 발생 시 해당 우편물을 변경된 수취인의 주소지로 전송해 주고 발송인에게 변경된 우편주소 정보를 제공

5. 환부취급 사전납부

가. (이용조건) 1회 500통 이상 매월 10,000통 이상(두 가지 요건 동시 충족) 발송하는 일반 계약등기우편물 발송인이 계약관서와의 계약에 의해 사전에 우편요금과 환부율을 적용한 환부취급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등기우편물

나. 취급방법

1) 수수료 산정방법

가) (환부율)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하여 적용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상

나) (수수료) 우편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른 환부취급수수료에 환부율을 곱하여 산정

※ 원단위 이하는 절상하여 10원 단위로 산정

2) (최초 적용기준) 최초 1년간은 다음 각 호에 0.5%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적용순서는 가)가 없을 경우 나), 나)가 없을 경우 다) 순으로 적용

가)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동일한 종류의 등기우편물에 대한 환부율

나)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우편물과 가장 유사한 종류의 등기우편물에 대한 환부율

다) 전체 등기우편물 환부율

※ 환부율은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산출·제공하는 자료 활용

3) 환부율 재산정

가) (재 산정 주기) 1년

나) (재 산정 방법) 계약일로부터 차년도 계약일 전일까지 접수된 우편물의 환부물량에 대한 환부율을 재산정

다) (재 산정 환부율의 적용) 계약관서는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환부율을 재산정하여 재계약 처리

4) 이용 해지 및 수수료의 처리

가) 발송인이 환부취급 수수료 사전 납부 이용에 대한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즉시 이용을 해지

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한 환부취급수수료는 환부취급 수수료 사전납부 해지일 접수되는 우편물부터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48호 (2012.10.1.)는 폐지한다.